

(별첨)

###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

#### □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탁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105조 제3항,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06조 제5항 제3호, 제109조 제1항 제2호, 제3항 제8호 및 제10호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85조 제1항 및 제2항, 제4-93조 제6호에 의하면,

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, 또한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

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%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고, 외국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

- (가) 신탁팀은 동양증권(주)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(이하 '계열회사 CP'라 함)을 자기가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

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인수회사<sup>\*\*</sup>인 솔로몬투자증권(주)(現 아이엠 투자증권(주)) 등 3개 증권회사<sup>\*\*</sup>가 계열회사 CP를 인수한 후, 신탁팀이 인수 당일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2011.11. 9. ~ 2012. 7.31. 기간 중 1조 1,829억원 상당의 계열회사 CP를 신탁재산으로 매수 한 사실이 있음

\* 동양레저(주) 4,900억원, 동양인터내셔널(주) 6,929억원

\*\* 신탁팀은 발행회사인 계열회사와 사전에 발행금리, 만기, 발행금액 등 인수조건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, 솔로몬투자증권 등은 신탁팀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춰 CP수령, 예탁 및 결제 등 단순증개회사의 역할만을 수행

\*\*\* 솔로몬투자증권(주) 5,501억원, 신영증권(주) 4,173억원, SK증권(주) 2,155억원

(4) 리테일본부 소속 136개 지점에서는 2011.11. 9.~2012. 7.31.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 CP 6,455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%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특정금전 신탁 계약 16,180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<sup>\*</sup>하고

\* 위탁자는 유선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1~270일에 직접 내점하여 신탁계약서 등에 서명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서면에 의해 동양증권(주) 계열회사 CP를 투자대상으로 지정

상기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으면서 동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음

- 신탁팀은 동 기간 중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계열회사 CP를 투자대상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열회사 CP 6,455억원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%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,

위탁자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#### <관련규정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105조 제3항,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06조 제15항 제3호, 제109조 제1항 제2호, 제3항 제8호 및 제10호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85조 제2항 및 제2항, 제4-93조 제6호